

ROBIT PLC
ROBIT PLC - 해외판매용 일반 판매 및 보증 약관

1 적용

- 1.1 본 일반 판매 및 보증 약관(이하 "**일반 판매 약관**"이라 함)은 Robit Plc 또는 그 계열사(이하 일괄하여 "**판매자**"라 함)가 고객(이하 "**구매자**"라 함)에게 판매하는 제품 판매 일체에 적용된다. 본 일반 판매 약관의 변경은 별도로 서면 합의하지 않는 한 적용하지 않는다.
- 1.2 본 일반 판매 약관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사용되거나 당사자의 별도 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보완하는데 사용되며 해당 계약의 필수 요소로 한다.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자의 제의나 구매자가 예약하지 않는 주문, 판매자의 주문 확인은 계약을 형성한다고 간주한다.
- 1.3 계약과 본 판매약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우선한다.

2 선적 및 납품

- 2.1 제품의 선적 및 납품은 핀란드 (Incoterms 2010) Lempäälä 공장도로 한다. 구매자는 제품의 납품 직후 제품을 검사한다. 부족 클레임은 납품 후 삼십(30) 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판매자는 주문서에 표시된 수량의 5%를 위약금 없이 선적할 권리를 갖는다.
- 2.2 판매자가 제공하는 발송 정보(발송 시간 포함)는 근사치이다. 판매자의 유일한 책임은 지정된 발송일을 준수하는데 합당한 상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특정 납품일이 합의되지 않았을 경우 판매자는 선적 준비의 통지를 구매자에게 발송한 후 제품을 납품할 권리가 있다.
- 2.3 구매자가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합의한 제품 발송을 인수할 수 없다고 통지하거나, 제품 선적 준비를 통지 받은 후, 판매자는 구매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제품을 보관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판매자는 합리적인 창고보관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제품에 관한 위험은 구매자가 합의 또는 통지받은 발송 시간을 인수할 수 없음을 판매자에게 통지할 때 이전된다. 아울러 판매자는 해당 제품의 후속 발송 이전에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구매자로부터 수령할 권리가 있다. 구매자가 삼십(30) 일 안에 발송을 인수할 수 없을 경우, 판매자는 기본 계약을 취소하고 보상 및 손해 전액을 구매자로부터 수령할 권리가 있다.
- 2.4 판매자의 과실 없이 물품을 정시에 선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품 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품은 선적 준비 통지와 같이 납품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인수

- 3.1 본 계약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따라 납품되는 일체의 제품은 납품일 이후 삼십(30) 일 안에 판매자가 서면 거부 통지를 수취하지 않는 한 최종 인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상기 인수는 본 계약에 따른 판매자의 의무 일체가 성실히 이행되었다는 확인과 제품에 관한 일체의 클레임에 대한 구매자의 기권을 구성한다.

4 하자보증

- 4.1 본 계약에 명시하는 조건에 따라, 판매자는 제품을 선적할 당시에 그 이후 십이(12) 개월 동안, 판매자와 구매자가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판매자의 정규 업무 관행에 적용되는 판매자의 최신 제품 규격(이하 "**제품 규격**"이라 함)에 부합한다고 보증한다.
- 4.2 본 계약에 따른 구매자의 단독 및 독점 구제책과 판매자의 보증 위반에 대한 유일한 의무는 판매자의 재량에 따라 (i) 하자 제품이 판매자에게 반품될 경우 구매자의 환급이나 (ii) 하자 제품의 수리나 교체로 한다.
- 4.3 구매자는 제품을 수령하는 즉시 제품을 지체없이 검사하여 납품일 또는 하자가 발견된 후 십사 914) 일 안에 구매자가 발견하거나 발견했어야 하는 제품 하자나 제품 규격과의 불일치를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전술한 통지에는 구매자가 하자로 간주하는 전체 제품의 종합 목록뿐 아니라 하자의 상세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판매자는 단독 재량에 따라 구매자가 제기하는 보증 클레임을 인수하기 전에(판매자의 단독 재량에 따라) 하자 물품뿐 아니라 하자가 발견된 실제 굴착 조건을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은폐된 하자는 발견일 또는 발견되었어야 하는 날짜 이후 십사(14) 일 안에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하자가 은폐된 하자임을 입증할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
- 4.4 판매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는 보증에 관한 기타 비용이나 관세,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교환된 하자 제품은 판매자에게 제공되며 판매자의 재산으로 한다. 제품을 판매자에게 반품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선적비용을 인수할 권리는 유보된다.
- 4.5 판매자는 하기 각 호의 제품이나 그 일부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a) 해당 납품 조건에 따라 판매자에게 책임이 없는 선적에서 파손된 제품; b) 구매자에 대한 납품 이후 사고나 부주의, 부적절한 보관, 제품에 부적합하거나 예상 성능 수준이나 취급, 용도를 제공할 수 없는 지속적 사용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제품; c) 정상적인 마모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제품. 본 계약에 명시되는 조건의 준수 불이행은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자의 클레임 일체에 대한 기권으로 간주한다.
- 4.6 해당 하자나 부적합성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의심되거나 제품 규격과 일치하지 않는 제품의 사용이나 조작은 엄격히 금지된다.
- 4.7 본 일반 판매약관이나 계약에 규정되는 명시적 보증을 제외하고, 판매자는 상업성이나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의 보증을 포함하여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일체의 보증을 거부한다.

5 유한책임

- 5.1 5.1 구매자는 본 일반 판매약관이나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5.2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져야 하는 총채무(클레임의 성격을 불문하고)는 구매자가 실제로 구입하는 제품의 총구매가로 제한한다. 판매자는 출장비나 수당, 선적 비용, 제품 사용의 손실, 이익이나 수입 손실, 신용 손상, 기타 재산의 손해, 지연, 해당 손해나 기타 손해에 대한 고객 또는 기타 제 3 자의 클레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계약이나 보증, 불법행위, 과실, 엄격한 책임, 등에 따라 발생하는 특수, 간접, 우발, 결과적, 징벌적, 전형적 손해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전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물 책임에 관하여 유효한 준거법에 따른 판매자의 의무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6 가격

6.1 제품 판매가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견적서에 명시한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발행하는 일체의 견적서는 견적서에 별도로 명기하지 않는 한 견적일 이후 삼십(30) 일차에 만료된다.

7 지불 및 권리의 이전

7.1 판매자는 납품 후 송장을 발행할 권리가 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제품은 2.4 조에 규정된 시기에 납품된 것으로 간주한다.

7.2 구매자는 기타 지불 조건을 합의하지 않는 경우 송장일 이후 30 일 안에 판매자가 송장을 청구하는 전액을 합의된 통화로 지불한다.

7.3 당사자는 누구도 상계나 반소, 경감, 기타 유사한 공제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하는 대금의 지불을 보류해서는 안 된다.

7.4 체납액에 대해서는 연리 10%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자 기간은 지불 기일부터 판결 이전이나 이후 판매자의 전액 수령일까지로 한다.

7.5 체납 시, 판매자는 구매자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대금을 수령할 때까지 계약의 이행을 중지할 수 있다.

7.6 체납 위약금은 30 일 이상 경과된 체납액에 금리 10%로 청구된다. 체납 위약금은 상기 이자에 가산한다.

7.7 아울러 판매자는 체납 이자에 덧붙여 체납으로 인하여 판매자에 발생하는 관련 회수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7.8 구매자가 본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불 기일까지 지불하지 않고 해당 대금의 지불을 서면으로 통지 받은 후 90 일 이후까지 불이행 상태가 유지될 경우 판매자는 판매자가 행사할 수 있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서면 통지를 구매자에 송부하고 판매자에게 발생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7.9 납품된 제품은 구매자가 본 일반 판매약관이나 계약에서 발생하는 계약 의무 일체를 이행할 때까지 판매자의 재산으로 한다.

8 대체 및 수정

8.1 판매자는 제품을 대체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단, 대체 또는 수정 제품은 해당 규격에 부합해야 한다.

9 구매자의 조건

9.1 제품의 선적은 항시 구매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판매자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판매자가 구매자의 재정상태를 납득할 수 없거나 구매자가 만기가 도래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는 판매자가 행사할 수 있는 기타 권리에 덧붙여 본 계약에 따른 선적을 유예 또는 거절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담보 또는 현금 선금의 수령을 조건부로 할 수 있다.

9.2 하기 각 호의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한 서면 통지에 따라 일체의 책임 없이 본 일반 판매약관이나 계약에 따라 발주된 주문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제품의 판매 및/혹은 납품을 금지하는 제재, 구매자의 지급불능, 구매자의 자발적 파산 신청, 구매자의 파산을 선언하는 강제 신청서의 제출, 구매자에 대한 관재인이나 수탁인의 임명, 채권단을 위한 구매자의 양도 이행, 구매자의 영업중단, 또는 통상적인 영업 과정을 제외한 대규모 자산의 매각.

10 취소 및 반품

10.1 구매자가 발주하는 제품은 구매자가 취소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 따라 납품 및 인수되는 제품은 반품 또는 취소할 수 없다.

11 불가항력

11.1 판매자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소요, 화재, 폭발, 홍수, 파업, 공장폐쇄, 금지명령, 연료나 전력, 원료, 인력, 컨테이너, 운송 시설 확보 불능, 사고, 기계 파손, 기계류나 장치의 고장 또는 오작동, 국방 요건, 판매자의 합리적 통제를 넘어 제품 또는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제조나 선적을 방해 또는 정해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품의 납품이 방해를 받거나 제한 또는 지연되는 경우 구매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 자료 및 지적 재산의 소유권

12.1 판매자가 본 계약에 따라 납품되는 제품과 관련하여 작성 또는 공개하는 장치나 장비(본 계약에 따라 납품되는 제품 제외), 설계(도면이나 설계도, 규격 포함), 견적서, 가격, 기록, 전자 데이터, 기타 문서나 정보 일체 및 관련 지적재산권은 판매자의 재산으로 한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제 3 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13 기밀유지

13.1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대방의 기밀독점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14 양도 및 하도급

14.1 구매자는 판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따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판매자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한 서면 통지에 따라 납품에 대한 현금 선금이나 추가 담보 제시의 요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본 계약에 따른 지불 조건을 일방적으로 조정할 권리가 있다.

15 통지

15.1 당사자 일방이 제공할 의무나 권리가 있는 통지나 지시, 기타 정보는 이메일이나 팩스, 등기우편을 통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송부되는 경우 유효하게 발송한 것으로 간주한다.

16 독립 계약자

- 16.1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는 독립 계약자의 관계이며, 본 일반 판매약관이나 계약 규정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기타 관계를 생성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구매자나 판매자는 상대방을 대신하여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비용이나 책임, 의무를 인수, 생성, 초래할 권리나 권능, 권한을 갖지 않는다.

17 완전한 합의, 일부 무효, 제목

- 17.1 본 일반 판매약관과 계약은 제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이의 개정은 판매자가 서면에 서명하지 않는 한 무효로 한다.
- 17.2 본 일반 판매약관과 계약은 제 당사자의 완전한 양해와 당사자간의 완전한 위험 배분, 합의 약관에 대한 완전하고 배타적인 진술을 구성한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면으로 명시하여 서명하지 않는 한, 조건이나 거래의 사용, 거래 또는 이행 과정, 일반 판매약관 및 계약을 수정, 변경, 설명, 보완하기 위한 양해 또는 합의는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수정은 일반 판매약관과 계약에 저촉되거나 이에 추가되는 약관을 포함하는 구매주문서나 선적 지시 양식의 확인이나 인수에 의해 발효되지 않는다.
- 17.3 일반 판매약관의 규정이 무효나 집행불능으로 선언될 경우 일반 판매약관의 기타 규정 일체는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 17.4 본 계약 조항의 제목은 제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포함되었으며 일반 판매약관의 해설이나 해석에 고려되지 않는다.

18 준거법, 분쟁 해결.

- 18.1 본 일반 판매약관은 국제사법 조항에 관계 없이 핀란드법에 따라 해석한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은 적용하지 않는다.
- 18.2 본 일반 판매약관이나 계약, 또는 이의 위반이나 효력으로 인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이나 논쟁, 클레임 일체는 핀란드상공회의소 중재원 규칙에 따라 임명되는 중재인 일(1) 인이 해당 규칙에 따라 진행하는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중재는 핀란드 탐페레에서 영어로 진행한다. 중재 판정은 당사자 양측에 최종 구속력을 갖는다.
- 18.3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부채의 추심이나 만기 대금 청구에 관한 사안에 있어 구매자의 관할 법원에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